

【자료소개】

1950년대 朝鮮紡織株式會社 쟁의관련 문서 해제

김 승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조선방직주식회사(이하-조방)는 1917년 11월 일본자본 미쓰이(三井)계열에서 설립한 대규모 면방적기업으로 해방 이후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춘 국내 방적기업 6개 가운데 하나로서 운영되기에 이른다.¹⁾ 해방직후 귀속기업체로 해당 사업체 하급간부가 운영하는 유형으로²⁾ 경영된 조방은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이 장기집권을 획책하면서 부산정치파동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1952년 3월 '조방낙면사건(朝紡落綿事件)'을³⁾ 시작으로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이후 전개된 1951년 12월부터 1952년 3월까지의 조방쟁의는 단순히 대규모 공장에서 발생한 자연발생적 쟁의가 아니었다. 해방 이후 귀속기업체를 둘러싸고 노사협조의 "균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물적기반으로 활용될 것인가, 아니면

-
- 1) 일제강점기 조방에 대한 경제사적 연구로 정안기(a), 2001, 「戰間期 朝鮮紡織의 事業經營과 金融構造-‘資金運用表’ 작성에 의한 收支構造分析을 중심으로-」 『經濟史學』 30; 정안기(b), 2002, 「朝鮮紡織의 戰時經營과 資本蓄積의 전개」 『經濟史學』 32 및 노동운동의 측면에서 연구는 박재화, 1993, 「1930년 조선 방직 노동자들의 파업연구」, 부산여대 석사학위논문; 이승희, 2003, 「일제하 부산지역 방직공장-고무공장 여성노동자들의 쟁의」 『梨花史學研究』 第30輯
 - 2) 해방 직후 부산경남지역 귀속기업체의 운영에 대해서는 차철욱, 1996, 「해방 직후 부산경남지역 사업체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성격」 『지역과 역사』 제1호, 126~129쪽.
 - 3) 조방낙면(朝紡落綿)사건의 당사자였던 김지태는 부산정치파동의 와중에서 중요 정치세력이었던 민우회(民友會)를 결성한 중심 인물이었다. 민우회, 조방낙면사건, 부산정치파동 등에 대해서는 金智泰 著, 1976, 「나의 履歷書」 136~141쪽, 145~154쪽 및 부산일보사, 1985, 『臨時首都千日』, 189~305쪽 참조

종업원과 노동조합의 경영참여권을 철저히 배제한 미국식 자본주의의 발전코스를 걷을 것인가 하는 양자의 분기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⁴⁾ 더구나 이 사건은 단순히 경영권을 둘러싼 노사의 대립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장기집권을 획책한 이승만의 정치적 간섭과 대한노총 사이 노동운동의 헤게모니를 두고 전개된 노동조합 내의 알력과 갈등 등이 중첩적으로 얽혀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경제계와 사회계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사건이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조방쟁의 관련문건은 기존의 공식기록에서 접할 수 없는 조방쟁의 지도부들의 당시 생생한 상황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특히 기존의 조방쟁의 관련 연구들이 1951년 10월부터 1952년 3월까지의 쟁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에 반해 이번에 소개하는 자료들 중에는 상당 부분이 1958년 10월 발생한 조방쟁의와 그 연장선에서 나타난 4·19 이후 해임된 노동자들의 원상복귀와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제기한 노동자들의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더욱더 크다고 하겠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조방쟁의관련 자료는 A4 용지 220장 정도의 분량이다. 건수로는 전체 20건이다. 20건의 자료를 작성연대가 아닌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세 개의 문서군(文書群)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1951년 3월 조방불하를 이틀 앞 두고 발

4) 中尾美知子(a), 1989, 「1951-52년 朝鮮紡織爭議-現代韓國 勞使關係의 스타트 라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논문; 中尾美知子(b), 1991, 「1950년대 한국노동운동의 분기점-조선방직 쟁의연구-」 『역사비평』 제1호; 任松子, 2004, 「1946~1952년 대한노총의 내부갈등과 그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8집 등을 참조. 해방직후 귀속재산이었던 조방의 운영, 대한노총 내부의 주류파와 비주류파의 알력, 이승만정권의 조방에 대한 장악 등 조방쟁의를 둘러싼 당시의 여러 가지 세력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재차 언급하지 않겠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생한 조방낙면(朝紡落綿)사건으로 김지태(金智泰) 경영진이 물러난 뒤 이승만의 후광을 업고 강일매 사장이 취임한 이후 노동자에 대한 탄압에 노골화 하면서 1951년 10월부터 시작된 조방쟁의에 관한 문서(I), 둘째 1958년 10월 발생한 조방쟁의 관련 문서(II), 셋째 1960년 4-19 직후 이전에 조방관련 쟁의에서 해임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원상 복귀와 조방의 정상운영을 요구한 관련 문서(III) 등이다. 각 문서군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1) 대한노총조방특별지부에서 발간한 『朝紡爭議真相』 문건이다. 이 문건은 편지지 용지 16장 분량에 작은 글씨를 철필로 등사한 문건이다. 문건의 발행 주체인 대한노총조방특별지부는 1947년 11월 결성된 조직으로 해방 직후 좌익의 전평계열 노조의 활동을 타도 목표로 해서 조방 내에 결성된 반공 노조이다. 조방특별지부는 귀속재산인 조방을 노사공동으로 불하받으려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였다.⁵⁾ 따라서 이승만의 후광을 업고 조방에 취임하게 되는 강일매 사장 이전 관리인이었던 정호중(鄭浩宗) 체제에서 노사의 밀월관계를 지속시키는 데 중심된 역할을 한 조직이다. 그러나 강일매의 조방 사장 취임 이후 어용노조를 통해 노동자들을 탄압하자 반강일매투쟁을 전개하는데 앞장선 조직이다. 문서의 내용 역시 1951년 9월 5일 강일매의 취임 이후 노조위원장매수, 조방특별지부 계열의 위원장 박승태와 부위원장 이상옥 해고, 반강일매투쟁의 시작과정, 강일매측의 조방쟁의 반대에 앞장선 조광섭(趙光燮), 주종필(朱鍾駢), 조룡기(趙龍基)의

5) 中尾美知子(a), 1989, 「앞의 논문」, 23~24쪽.

약행,⁶⁾ 조방쟁의에 대한 국회의 조방쟁의진상조사 및 강일매 퇴진결정, 이승만의 노동계 통일을 위한 통일전국대회준비위원회의 모임을 경무대에서 갖게 된 배경 등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방쟁의를 타결하기 위해서는 통일전국대회의 결정사항이 중요한 만큼 모든 역량을 이 대회에 결집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문건은 끝을 맺고 있다. 따라서 1951년 10월 발생하여 12월 25일부터 전면전으로 확대된 조방쟁의의 전후사정을 알 수 있게 하는 문건이다.⁷⁾ 특히 대한노총의 해계모니를 두고 전개된 노동계내의 분열과 대립이 조방쟁의에 투영되어 있었음을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 사료적 중요성을 갖는다. 전문은 기존의 노동운동 관련 책자에 수록되어 있다.⁸⁾ 그 만큼 이 문건이 갖는 사료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기존의 책자에 수록된 『朝紡爭議真相』은 발행 주체가 대한노총조방특별지부가 아니라 대한노총특별지부 쟁의대책위원회로 되어 있다. ‘쟁의대책위원회’의 명칭이 덧붙여 있는 것은 대한노총에서 책자를 발간할 때 추가 기술된 것으로 판단된다. 문건의 발행 시기는 전후의 내용으로 보아 대한노총 제6차 전국대회의 개최시기였던 1952년 5월 30일 이전으로 여겨진다.

2) 1952년 3월 17일 현재 ‘조방쟁의피탈주권쟁취위원회(朝紡爭議被奪主權委員會)’ 명의로 작성된 『罷業従業員名單』이 있다. 이 명단에는 남자 76명, 여자 38명 전체 114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 명단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장재봉(張在鳳)과 이상옥(李相玉)이다. 장재봉은 1949년 11월부터 1951년 7월까지

6) 각 인물들에 대해서는 任松子, 2004, 「앞의 논문」, 128~131참조.

7) 1951년 12월~1952년 3월까지 일자별 조방쟁의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한국노동조합운동사』, 360~366쪽.

8)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앞의 책』, 381~387쪽.

조방에서 근무하였는데 조방 중역진과 회사를 공동불하 받으려고 준비 중이다 조방낙면사건으로 체포되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 반을 판결 받았다.⁹⁾ 이상옥은 1918년 출생으로 북경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1935~1939년 경상남도 산청군과 남해군 지방교화주사를 비롯해 총독부 사정국(司政局)에서 근무하다가 해방 후 부산에 와서 1946년 조방 경비과에 취직하였다. 1951년 5월 26일 집권세력이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출근길 국회의원들을 경남도청 정문에서 체포한 5·26사건, 흔히 부산정치과동의 와중에 민국당과 재야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그해 6월 부산 광복동 국제구락부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반독재호헌구국선언문’사건, 일명 국제구락부사건으로 각각 구속되기도 했다.¹⁰⁾ 이때 구속된 인물 중에는 대한노총의 선봉대로서 해방 직후 좌익계의 전평(全評) 영향력이 강했던 부산에 대한노총의 산하기관으로서 대한노총부산지구연맹을 결성해 전평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대한노총의 세력을 확장하는데 앞장섰던 송원도(宋元道)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구락부사건으로 검거된 이상옥은 1951년 9월 이승만의 후광을 업고 조방에 취임한 강일매(姜一邁) 사장의 어용노조 운영에 맞서 1951년 12월 7일 신임노조의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이었던 박승태(朴昇台)와¹¹⁾ 함께 조방쟁의를 이끌었다. 이후 1960년 1월 전국해상노조연맹사무국장과 그해 11월 한국노련중앙위원과 전국해상노조연합회 최고위원을 거쳐 1969년 전국해원노조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¹²⁾ 특히 그

9) 『東亞日報』 1951.5.9;8.16;8.30

10) 釜山日報社, 1985, 『臨時首都千日』, 304쪽

11) 참고로 中尾美知子は 자신의 논문(中尾美知子(a), 1989, 「앞의 논문」) 전체에서 박승태(朴昇台)를 박정태(朴鼎臺)로 잘못 표기하였다.

12) 장재봉과 이상옥에 대해서는 中尾美知子(a), 1989, 「앞의 논문」, 65~66쪽 및 『민주신보』 1951.8.30

는 1950년대 후반 대한노총의 중요 세력 중에 하나였던 부산부두노조를 결성하여 부산부두노조는 물론이고 대한노총 내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을 상당히 발휘한 인물이다.¹³⁾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罷業從業員名單』은 장재봉과 이상옥이 중심이 되어 조방쟁의가 한창 전개될 때 파업참가자들의 단결과 투쟁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신들을 ‘조방쟁의피탈주권쟁취위원회’란 이름 아래 파업참가에 적극적으로었던 인물들의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1960년 8월 조방쟁의피탈주권쟁취위원회 위원장 박승태(朴昇台) 명의로 ‘조선방직주식회사 종업원피탈주권환원에 관한 건’으로 작성한 『陳情書』이다. 박승태는 강일매 사장이 조방에 부임한 이후 노조를 어용화 하자 여기에 맞서 1951년 12월 7일 조방노조 정기대회에서 신임노조 위원장으로 선임된 인물이다. 진정서 분량은 편지지 10장 정도인데 제출처 자체가 어디였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내용은 조방의 창설, 해방후 자치관리위원회, 귀속공장으로서 관리, 조방불하사건, 조방쟁의, 국회환원결의, 강일매사장의 조방불하와 그의 치부, 마지막으로 진정서를 작성한 주체측이 제기한 강일매 사장의 5가지의 횡포 등을 서술하였다. 『陳情書』는 분량이 많지는 않지만 해방 이후 조방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또 자치관리위원회에서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귀속재산인 조방을 정부로부터 공동불하 받아 공동 운영기로 하고 중역진 5할, 노동자 4할, 나머지 1할은 공장운영에 공로가 있는 사원에게 각각 분배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리고 불하를 받는데 필요한 노동자분 입찰보증금 3억 7천만 원을 노동자들이 모았던 점. 조방낙면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게 되었으며 또 사건

13) 김기옥의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앞의 책』, 440~449쪽.

이후 새로운 사장으로 부임한 강일매 경영진의 인적구성과 강일매가 조방을 불하받는 과정에서 자행한 각종 악행들, 예를 들어 조방 불하와 동시에 종업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위로금 6억 5천 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 모든 종업원에게 분배해야 할 총 주식의 2할(시가 3억 5천 만원)을 임의로 처분한 것, 10~20년 동안 근무한 옛 종업원들을 파면 추방한 것, 공장보유 견직기 이외 수많은 재료품, 화학약품 등을 임의 불하하고 심지어 5천 노동자들의 유일한 후생시설인 2만여 평의 운동장을 개인 일인에게 50년 기한으로 임대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해방 이후 조방경영과 조방낙면사건, 뒤이어 진행된 강일매 경영진의 비합리적 기업경영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II

1) 1958년 12월 조방부당해고자일동 대표 권종근(權鐘根)이 대한노총 총본부 위원장 앞으로 편지지 8장 분량으로 보낸 「不當解雇者復職狀況件」이다. 서술 자체가 굉장히 난필(亂筆)로 되어 있어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이 문서는 1958년 10월 15일 발생한 조방쟁의 상황을 일자별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특히 이때의 조방쟁의는 조방혼자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원래 10월 7일 대한노총 전국섬유연맹 제7차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된 임금 인상 30%를 관철하기 위해 일어난 쟁의임을 확인시켜 준다. 조방쟁의는 10월 12일 준비단계를 거쳐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조방의 어용노조는 노조위원장 이상은(李相殷)을 필두로 파업참가자에 대해 시말서를 강제로 제출케 했는데 그 결과 10월 19일 30명의 무기휴직자들이 최

초로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당시 언론은 조방쟁의에 대해 노동자들이 1958년 10월부터 임금인상 50%를 내걸고 시위한 결과 그해 12월 노사 양측이 임금 30% 인상과 해고 노동자 18명의 우선 복직으로 타결되었음을 확인시켜 준다.¹⁴⁾ 이 문건의 내용이 축약본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 1959년 1월 조방부당해고자 일동 대표 권종근(權鐘根) 명의로 편지지 용지 4장 분량으로 작성된 「保健社會部 長官앞」 문건이다. 이외 「勤勞基準法 違反關係」의 문건이 있다. 이 문건은 편지지 9장 분량 자필로 1958년 10월 조방쟁의를 상황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서술 분량은 편지지 3장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내용은 앞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결국 위의 세 문건은 1958년 10월 발생한 조방쟁의의 발생배경과 쟁의 초기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겠다.

2) 1958년 조방쟁의 지도부는 쟁의 시작과 함께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서울의 대한노총 지도부에 한 인물을 파견하여 애초 조방불하와 관련된 문제와 함께 향후 조방쟁의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대한노총 지도부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經過報告」 문건이다. 이 문건은 누가 작성하였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글씨체와 전후사정을 감안할 때 1951년 연말 조방쟁의의 중심에 있었던 전 노조위원장 박승태 혹은 전 부위원장 이상옥 둘 중 한 사람이 아닌가 싶다. 「經過報告」는 1958년 쟁의 지도부에서 서울에 파견한 인물로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누구를 만났으며 어떤 논

14) 『東亞日報』 1958.12.11. 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79, 『앞의 책』 461쪽에서는 11월 3일 조방쟁의가 노동자들의 요구조건이 관철되어 종결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본고에서 언급한 일련의 문서자료를 볼 때 이는 잘못 기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의들을 하였는지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경과보고」 문건은 서울에 파견되었던 인물이 부산에 돌아와서 조방쟁의를 주도하는 핵심 인물들에게 서울의 출장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으로 생각된다. 서울에 파견된 인물은 16일 첫째 날 국회재정경제위 소속 국회의원 이종남(李種南)을¹⁵⁾ 만나 조방 불하 당시의 비리와 관련하여 국정감사에 대해 주문하였다. 그러나 이종남(李種南)은 국정감사는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것이지 당장 국감을 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서울에 파견된 인물 또한 조방불하 당시의 비리문제는 불하를 받은 당사자와 사이에 성립되는 것이지 정부로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 결과 조방불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에 머무는 동안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았다. 19일에는 철도노조위원장이면서 대한노총 부위원장인 강태권(姜泰範)을 만나 임금인상 30%의 관철과 해고노동자 복직을 꼭 관철시킬 방안 등에 대해 상호 논의하였다. 그 뒷날 20일 역시 대한노총 부위원장 성주갑(成周甲)을 만나 조방쟁의의 성공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문건으로 「金舜泰良와의 이대부, 太陽堂茶房에서」 문건이 있다. 이는 이상옥이 1958년 11월 19일 태양당 다방에서 이전에 강일매에 매수되어 1952년 조방쟁의 당시 어용노조를 맡았던 김순태양을 인터뷰한 내용을 편지지 7장 분량으로 서술한 것인데 그 내용 중에는 김순태를 중심으로 강일매가 어용노조를 결성할 때, 조건부로 장차 조방이 불하를 받으면 일정금액을 노동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15) 이종남은 1919년 생으로 광주고보를 나와 일본 대관경영대학을 졸업하였다. 해방 후 외무부 서기관 행정신문 논설위원, 경상남도의회 의원을 거쳐 대한노총 중앙본부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이후 4대,5대국회 때는 민주당으로 8대 때는 신민당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지역구는 모두 부산진갑이었다.(『사건으로 본 국회20년』 및 『역대국회의원총람』 참조)

그것을 위반하고 김순태를 해고한 사실이 서술되어 있다. 김순태의 진술을 통해서 애초 강일매가 사장 취임 이후 어용노조를 결성할 때 어용노조원들에게 장차 조방이 불하를 받을 때 우선적으로 어용노조원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것처럼 약속하고 어용노조원들을 모았음을 엿 볼 수 있다. 결국 1958년 10월의 조방쟁의는 임금인상을 위한 일상적 파업의 수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파업지도부 및 관련자들의 치밀한 준비 끝에 진행된 쟁의였음을 위의 세 문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3) 1959년 1월 편지지 4장 분량으로 대한노총 경상남도노동조합연합회 위원장 성주갑(成周甲)이 국제신문사 앞으로 조방과 조방의 어용노조가 저지르고 있는 비민주적 처사에 대해 사회적 여론을 환기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과 같은 분량으로 성주갑이 조방 노조위원장 앞으로 보낸 「노동조합에 관한 질의서」가 있다. 이 문건에서 노조는 조방불하 당시 정부로부터 받은 광목 9만 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만약 파악하고 있다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1958년 10월 발생한 분규사태 때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사용자측의 입장에 서서 노동자를 고통에 빠트린데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서신이다. 질의서와 서신은 한 묶음으로 되어 있다. 성주갑은 동년 1월 편지지 10쪽 분량으로 경상남도지사에게도 「노동조합법 및 노동기준법위반 사실에 대한 보고의 건」 또한 제출하였다. 내용은 조방 사용주의 악덕 행포를 고발하고 특히 어용노조의 조합원 탄압과 노동자의 인권유린에 따른 조방 노동자들의 억울한 실정을 보고하는 것으로 ① 조방 불하 당시 정부로부터 받은 광목 9만 필을 사용주가 횡령한 사실 ②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의 산전산후 휴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 ③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근,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시말서를 적게 하여 노동자 3백 명을 해고한 일 ④ 해고 당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 ⑤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사용자 일방의 취업규칙과 사용자 앞잡이를 통해 노동자를 감시 감독하는 일, 이에 여공들은 수면을 내쫓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근무하는 현실 ⑤ 설이 가까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체불 임금 2개월분을 지불하지 않는 사실 등을 고발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그런데 고발성을 갖는 이 문건은 각 내용을 서술한 상단에 항목별 순서를 아라비아숫자로 새롭게 매겨 놓고 또 본문의 내용을 여러 군데 수정한 것으로 보아 이 문건 자체가 곧바로 경남도지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경남도지사에게 발송할 완성본 문건의 초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문건의 축약본이 편지지 6장 분량으로 작성된 것이 있다. 전체적 내용은 동일하지만 전자와 다른 점은 문서 말미에 해고자 15명의 명단이 기재된 점이다.

4) 1959년 1월 편지지 9쪽 분량으로 대한노총 부위원장 강태범(姜泰範) 앞으로 보낸 『姜泰範副委員長 貴下 歎願文』이다. 탄원서의 표지 1쪽은 청색 펜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1쪽의 뒷면 곧 2쪽은 성명이 없는 상태로 15명의 목도장이 찍힌 채 검정색 펜으로 ‘조선방직공업주식회사 부당해고자일동 대표 권석근(權鐘根)’이 보건사회부 장관 귀하에게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본문의 3쪽부터는 또 강태범에게 호소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1~2쪽과 본문(3~9쪽)의 서체와 편지지 모양이 다른 것을 감안할 때 먼저 본문을 서술하고 그 뒤 서술자가 표지 맨 앞쪽 1쪽을 작성한 뒤 그 뒷면, 곧 2쪽에 권종근이 후술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탄원서의 본문 자체를 누가 작성하였는지 확인 자체는 어렵다. 그러나 서체를 볼 때 당시 경상남도 노동조합연합회 위원장 성주갑(成周甲)이 작성한 것이 아닌가 싶다. 본문의 내용은 노동자들이 시말서를 강요받고 500여 명이 억울하게 해고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조합이 경영진과 결탁하여 오히려 노동자를 더 고통과 불안공포에 허덕이게 한 점, 기업주의 임금 인상 30%의 약속 위반, 구정을 앞둔 시점에 두 달분의 임금마저 지불하지 않는 회사의 부당행위 등에 대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해고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들로 되어 있다. 탄원서의 내용대로라면 쟁의 당시 노사가 합의를 본 임금인상 30%는 실제 지켜지지 않았다. 이 점은 1959년 2월 대한노총 경상남도노동조합연합회 위원장 성주갑(成周甲)이 편지지 9장 분량 자필로서 조방 앞으로 보낸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위반 사실에 관한 시정 요청건」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성주갑의 시정요청건의 내용은 ① 조방불하 당시 종업원 퇴직금 및 해고사실 그리고 불하당시 정부에서 지불한 바 있는 광목 9만 필에 대한 사용 내력 ② 근로자의 약리(弱利) 행위를 구실로 근로자 1인당 평균 7천원에 가까운 금액을 강제로 차감하여 그 금액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수차에 걸쳐 그 출자금을 환원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지금까지 지불하지 않는 이유 ③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 ④ 30%임금 인상을 (1958년-오희간) 12월 노사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는 않는 이유 ⑤ 터무니 없는 시말서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하여 3,4백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이유 및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징계하는 것에 대한 해명 ⑥ 이상의 사유에 대해 2월 6일까지 조방에서 해명하지 않으면 대한노총 중앙본부와 긴밀한 연락 아래 부당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통고하는 것들이었다.

5) 이 밖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1958년 10월 조방쟁의와 관련하여 자유당 중앙의장이면서 국회의장이었던 이기봉(李起鵬)을 상대로 작성한 「진정서」가 있다. 내용은 강일매와 그의 처남이면서 강일매 사후 조방의 사주로서 활동한 사장 정태동(鄭泰東)의 비리를 아주 온건한 목소리로 비판한 진정서이다. 분량은 편지지 13장으로 되어 있지만 글자가 크고 한 줄씩 띄어쓰기를 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서술 분량은 편지지 5~6장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외 편지지 4장 분량의 「不當解雇者 및 無期休職處分當한 者 名單」에는 92명의 휴직 및 해고를 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편지지 4장 분량의 「朝紡勞動組合代議員名單」이 있다. 전체 108명의 대의원 이름을 적어 놓았는데 그 중에 44명은 현장부서와 이름을 같이 기재하였으나 나머지는 이름만 기술되어 있다. 대의원 명단에는 1951년 10월부터 시작된 조방쟁의 당시 조방노조 감찰부위원장이었던 전병택(全秉澤), 노조부위원장 이상옥(李相玉)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1958년 조방쟁의 역시 이전의 1951년~1952년 조방쟁의의 연장선상에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6) 비슷한 시기 작성된 편지지 13장 분량의 「朝紡問題 聲明書」 문건은 내용을 기술한 뒤 밑줄로서 수정한 것으로 보아 성명서를 내기 위한 기초 초안문으로 생각된다. 내용은 폭압적인 강일매사장 아래 고통 받고 신음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대우에 견디다 못한 노동자들이 “폭군 강일매 조방으로부터 물러나라”는 프랜카드를 굴뚝에 달고 투쟁한 일, 조방을 정부로부터 불하 받을 때 노동자들이 노사공동불하를 염두하고 마련했던 입

찰보증금을 노동자의 허가도 없이 조방불하 충당금으로 사용한 사실, 강일매 처남인 정태동(鄭泰東)사장의 횡포, 1957년 3월 노동자를 강제 퇴직시킨 일, 1958년 월차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들을 기술하였다. 문서의 작성 시기는 1958년 무렵으로 판단된다. 같은 내용의 초고본 성격을 갖는 「조방기업주 정태동에게 보내는 공개장」이란 편지지 11장 분량의 문건이 다른 문건 속에 묶여져 있다. 이외 「朝紡勞動者에게 檄한다」 격문은 전체 “근로기준법 제47조와 제48조에 의거한 1956년도 및 1957년도의 연차금, 월차금의 즉시 지불을 요구하자!!” “폭군적 군림으로서 우리 조방노동자를 인간 이하의 학대로서 대하는 정태동을 규탄하자!!” “굴욕적인 복종을 거부한다고 직장을 이동케 하고 시말서, 각서 및 사표를 강제 제출케 하는 독선(獨善) 정태동을 규탄하자!!” “어용노동조합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탄압으로서 부당한 간섭을 하는 악덕 정태동을 규탄하자!!” 등과 같은 16개의 문구로 되어 있는 격문이다. 1958년 조방쟁의 당시 작성된 문건이다.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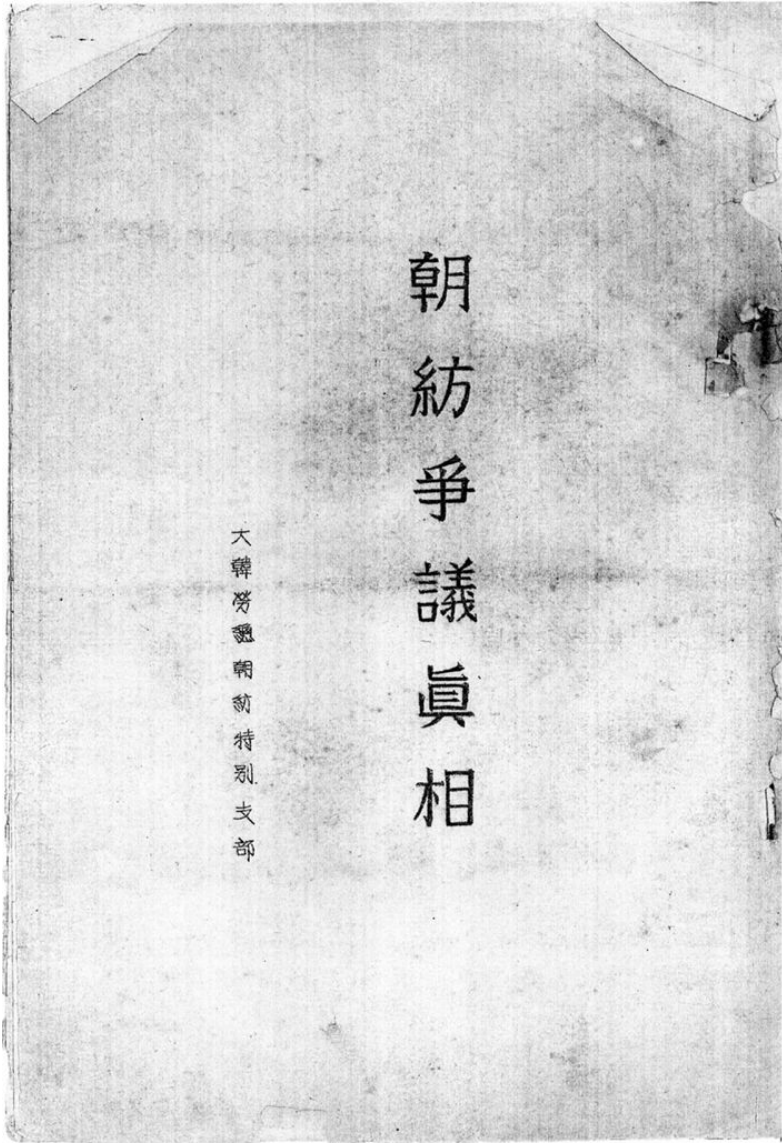
1) 1960년 4·19혁명 직후 조방쟁의피탈주권쟁취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宣傳文 其二(2)」가 있다. 분량은 편지지 6장 정도인데 내용은 강일매의 조방불하 당시 노동자들이 마련했던 입찰보증금이 충당된 사실, 강일매 사후 삼호재단(三護財團) 악덕기업주 정재호(鄭載護)에게 조방이 양도된 일 등을 기술하면서 이승만 독재정권 아래 악덕기업주에게 빼긴 조방을 다시 원상대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글을 맺고 있다. 전후 내용을 보아 앞서 언급한 1960년 8월 발행한 『陳情書』보다 시기가 앞

서 작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외 4·19혁명 직후 박승태, 이상옥 등이 중심이 되어 조방쟁의피탈주권쟁취위원회를 구성하여 1960년 8월 7일 위원회 결성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사용된 문건으로 판단되는 B4용지 2장의 철판 등사지로 작성된 문건이 있다. 내용은 선언, 강령, 회칙 순으로 되어 있고 회칙은 총칙, 구성, 권리와 의무, 기관 및 회의, 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원의 임기는 조방을 원상회복하고 해산할 때까지로 되어 있어 조방쟁의피탈주권쟁취위원회는 조방을 정상적으로 접수한 뒤에 해산할 잠정적 조직체였음을 보여준다. 문서의 끝에는 실무위원회 8명과 심사위원회 8명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1951년 연말부터 시작된 조방쟁의 당시 노조의 중심인물이었던 박승태, 이상옥, 장재봉 등이 눈에 띈다. 편의상 이 문건을 「結成大會文件」으로 명명했다.

2) 「結成大會文件」과 짝을 같이 하는 것이 박승태 작성의 「呼訴文」이다. 박승태는 8월 7일 조방원상회복을 위한 모임을 개최한 뒤 여기에 참가한 동지일동에게 조방쟁취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지 1장 크기의 「呼訴文」을 작성했다. 「呼訴文」은 철판로 등사된 것인데 위원장 박승태의 도장이 등사지 위에 붉은 인주로 찍혀 있다. 그리고 조방쟁의피탈주권쟁취위원회 위원장 박승태 명의로 1960년 9월 철판 등사지로 작성된 B4 크기 3장의 또 다른 『呼訴文』이 있다. 내용은 조방쟁의 이후 8년 동안 신음했던 조방노동자들이 4·19이후 민주시대를 맞이하여 조방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1960년 8월~9월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습자지 2장에 쓰인 「聲明書」이다. 내용은 그 동안 피해 받은 노동자들의 원상복직을 5개 항목으로 2대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다. 각 항목은 해고노동

자의 원상복직, 퇴직금과 해고수당 지불, 해고노동자에 대해 회사측과 조방쟁의피탈주권쟁취위원회가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회사에 입사하도록 할 것, 미지불퇴직금에 대해서는 완불할 것, 1955년 조방불하 될 때까지 정부관리 기간 중의 퇴직위로금조로 불하대금에서 공제된 10억 3천만 원을 정부에서 조사하여 당시의 전종업원에게 지불할 것 등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조방쟁의 관련 문서들은 귀속기업체로서 관리되던 조방의 불하를 둘러싸고 시작된 1951년 10월의 조방쟁의, 이후 강일매 경영진의 폭압적인 노동자 탄압에 맞선 1958년의 조방쟁의, 4.19 직후 해직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복직운동과 조방정상화 등을 요구하는 내용들은 1950년대 조방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물론이고 1950년대 이승만의 장기집권 기도 속에서 드러난 정경유착이 낳은 기업체 운영의 문제, 그리고 이와중에 정치권과 연계된 대한노총 내부의 주도권 다툼 등이 얽혀 있었음을 한 눈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사료들이다. 지면관계상 첨부한 원문은 『朝紡爭議真相』에 한정했다.



朝鮮紡織株式會社 朝 紡 爭 議 眞 相

一. 朝 紡 爭 議 發 端 的 原 因 及 動 機

1. 姜 一 道 社 長 的 挑 發

去年之月五日朝紡社長으로 就任한姜一道氏는 就任後不過一個月이 滿되어 過去東亞百貨店管理人時代의 우리勞動者를 彈壓酷使한 前科의 惡習을 날아내기 始作하였으므로 所謂企業主의 立場에서 雇傭하고 있는 勞動者를 封建時代의 暴君과 같은 實行을 政行한 實證的인 事實이 있어 故으로 이러한姜氏의 挑發的인 行動은 朝紡勞動者로 하여금 莫敢 非難의 勇氣에 勇斷하게끔 鼓發하였다

(가) 社 長 的 計 劃

朝紡社長姜一道氏는 朝紡의 社長으로 就任하자 그는 自己의 親近者 및 過去東亞百貨店時代雇傭하고 있던 走狗一味의 舊黨을 朝紡의 中堅幹部로 入社시키기로 하여 一策을 講究하였던 것이다. 極히 이 방법은 過去東亞百貨店에서 採擇하였던 無條件解雇인대 東亞百貨店時代에는 大韓勞動東亞百貨店勞動組合의 上部組織인 서울市聯盟의 強力한 爭議로 말미암아 進退가 兩難之格이 었기 때문에 姜一道氏도 苦境에 빠지고 있을 때 大ニ 爭議의 發端되어 爭議가 中斷되었으므로 其終末을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美一進氏は 이러한 經驗을 利用하여 朝勤社長으로 就任하자 入社後一個月이 뒤되어 大幅의 人
 人事變動을 實施하여 過去數十年向 朝勤과 死生榮辱을 같이 하여 온 技術者 및 熟練된 事務
 員을 無條件으로 解雇 降等 轉勤을 시키고 一〇〇名의 新入社 幹部(社員級以上이며 朝勤
 에서는 社員級이라면 中等學校 卒業者가 五年以上 連續勤勞者、小學出身은 十年內至十五年以
 上 連續勤勞者가 獲得할 수 있는 職位)가 을 미더시 밀어오는데 該 社의 勞動者들은 이러
 한 前例 없는 人事變動에 不안을 느끼며 惡劣의 愁色이 濃厚하였다 美一進氏は 이 好機를
 그대론 두지 않는 것이다 社長을 廢場을 다니며 나를 反對하는 사람은 絶對로 容恕치 않는다
 朝勤에는 約二百名이 늘고 먹는 자가 있는데 이네들이 作田하여 나를 反對하여 할 것이다 고 脅
 迫하고 다녔다 그러나 그의 算盤에 一〇〇名 新入社로 因하여 膨脹된 一〇〇名의 餘剩人員의
 整理를 料理하는 方法에 病心하였으나 그는 無難히 一〇〇名의 整理를 할 수 있는 條件으로
 其當時의 朝勤 勞務組 幹部 一黨 金齊泰 以下の 約十餘名을 買收하는데 成功하였기 때문이었
 다 過去 東亞百貨店 管理人 時代는 勞動組合의 抗議를 拒否하였기 때문에 失敗하였지만
 은 今我에는 勞務幹部가 自己를 支持하니 如何한 彈壓과 酷使 또는 無條件 解雇를 시키도
 個人資格으로 自己를 相對하여 말성을 이르킬 者는 없을 것이라는 自負心을 가진 美一進氏は
 决斷 있게 人事配置를 完了하고 整理人員에 該當되는 舊職員들에 對하여 社長室으로 出

하여 쟁표를 函授하고 或은 辱詔로서 人權을 踐하고 到底의 견디지 못하게 하여 遂出할 여는 것이 殘忍한 그의 計劃이 었던 것임니다

(나) 朝勅의 輿論

前述한 바와 같이 社長姜一進氏는 事務所에서 就務하다가 社長이 드러올 때 참수人들을 늦게 하여도 解雇시켰고 社長室에는 5명의 秘書를 거느리고 護衛警備과 秘書가 拳銃을 차고 後業員을 社長室에 運行하는 등 참으로 朝勅에는 사람과 다 不安과 恐怖가 充溢하여 或은 生産工場 社長秘書가 拳銃이 무슨 必要가 있을가? 後業員이 咸集되는 일을 社長이 饒넌다고 자랑하게 하는가 이 령게 不安하고 不法으로 解雇식히고 理由없이 社長室에 불러와 의자사너는 말성끼리아 쟁표를 내고 빨리나가 이자사 되지 못한 子息 마지막과 같은 子息 하고 罪人取扱以上 刑事々件에 取調 받은 以上이다 그렇게 하여도 所謂 勞動者의 福利를 爲하여 투 爭한다는 勞動組合의 非行인 謀略으로 後業員을 中傷이나 하였지 아직 社長의 坵坵나 勞動問題를 가지고 勞動者를 權護하는 立場에서 勞動者를 代辨하는 것을 보지 못한 無能한 者들이다 그것보담 社長의 坵坵를 勿하고 社長의 命令에 無條件 服從이 있을 辨이다 不法으로 解雇를 當해도 社長이 人事權이 있으니 人事權의 侵害를 勿한다고 勞動組合에서는 그 러한 不구을 하는 癖을 도르해 處斷한다고 揭示板에 大書特筆로서 써서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社長과 勞勤組合幹部와 相通하여 實施되고 있는 彈壓이다. 그렇다면 今年十月에 定期全體大會에는 勞勤組合을 그대로 두어서는 到底의 勞勤者가 維持할 수 없다는 勞勤組合을 非難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朝勤의 輿論은 社長을 相對하여 勞勤者를 代辨하고 社長의 原因 不明의 彈壓과 辱說과 無條件 解雇는 防止할 수 있는 強力한 勞勤組合의 構成이 있어야 하겠다. 勞勤者 希求가 그 當時의 輿論을 支配하고 있었다.

(나) 勞勤運動의 不當干涉

人氣 없는 勞勤組合幹部를 定期大會에서 改選하려는 것은 民主々義 勞勤組合에서 있을 수 있는 發展의 要素이다. 그러나 姜一進氏는 突然히 勞勤組合運動에 全面的干涉을 하여 自己의 夫狗로 된 御用勞勤組合을 擁護하여 自己의 行動을 드잡는 勞勤의 殘留를 과하고 勞勤委員長의 候補者 및 그를 擁護하는 勞勤者를 社長室에 呼出하여 勞勤運動을 拋棄하지 않으면 罷免하겠다고 脅迫을 하고 家族이 불상하니 家族들을 生營하여도 棄權하라는 등의 暴言을 쓰고 姜氏는 自己側의 運動을爲하여 直接社長이 勞勤委員長 選舉運動을 하고 相對方의 運動을 모하기爲하여 工場內의 出入을 禁하고 十二月七日 朝勤定期全體大會를 앞두고 十二月六日 大會前日에 代議員의 中心人物인 二名의 代議員에 出張命令을 發하여 大會參席을 不能케 하고 大會當日에는 臨時議長으로 選出될 同志一名을 大會에 參加케 하게

하기 위하여 警察에 報告하여 刑罰로 하여금 審問을 받게 하여 進行하게 한 事實도 있었다

(라) 姜一蓮氏側의 敗北과 其後의 行動

언제나 不法的인 抑壓이 있을 때는 民主國家 勞動者는 도리어 反撥心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彈壓과 謀略과 權才으로 勞動者를 威嚇하였지만은 十二月七日大會에서는 姜一蓮氏側 所謂御用組合은 完全히 敗北으로 돌아 가고 말았다. 姜氏의 計劃이 水泡로 도라가자 一層 더 發惡의으로 彈壓하기 시작하는 一便 當選된 勞組委員長은 社長室에 出入하여 勞動運動이 웃주고 받주나 勞動運動이 없어야 할 리 辭表를 내고 나가 一하여 勞組幹部를 차례로 불러 所謂委員長은 勞動者의 代表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 당할 자식 하며 辱罵과 甚至於 毆打까지 할려고 덤비고 있었다.

(마) 新勞組의 妥協策과 國酒解決을 爲한 努力

新任 勞組委員長 朴昇白氏는 社長의 이러한 意圖가 결코 工場內 一部 附屬派의 謀略에 基因한 것으로 規定하고 戰時 下 勞資 爭議는 國民의 良心에 呼籲하여 雙方에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하여 事態를 円滑裡에 解決하기 爲하여 우리 勞組는 社長을 도와 生産에만 主力을 傾注할 意圖이오니 社長께서 어떠한 誤解가 있다면 虛心 彈復하게 하고 國家 生産을 爲하여 協調하는 것이 建設的인 것으로 代로는 哀乞도 하였고 代로는 會社의 다른 重要 幹部들에게도 그렇게 傳言

을付託한事實도 있었던 것이나 社長은 終始一貫 勞組解體政策을 講定할 뿐이고 勞組幹部에對한 彈圧은 辯說과 並行하여 날도 尤甚하여 갔던 것이다

(나) 姜氏爭議를 爲한 最後의 挑戰

姜一蓮氏의 敗北한 그 走狗一味는 最後의 挑戰으로 其當時 統一勞農黨 結成 準備委員會라 하여 會社內에 看板을 건 勞組에 對抗하기 爲하여 加入書를 配布하고 萬一新黨을 反對하는 者는 大統領을 反對하는 者라 하여 宣傳하고 一便 姜一蓮氏는 勞組의 解體企圖를 露骨化시키고 十二月十三日에는 勞組幹部二名을 無條件 解雇시킨 事實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事態를 平和裡에 解決하려는 勞組自體의 企圖를 憂慮하는 나머지 上部勞組에 이 事實을 吶訴하고 不得已 爭議에 吶訴할 여는 決心을 굳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 勞組委員長의 登壇

이 事實을 釜山地區에 吶訴한 結果 其當時 地區委員長 宋氏는 中央委員長 錢鎮漢氏에게 이 經過를 報告하였다 錢委員長은 事態를 把握의 解決할 生覺으로 十二月十四日 於 姜一蓮氏를 訪問하여 協請을 要請하고 勞助者의 계 暴言을 삼가하라는 要請을 하는 刹那에 이 자식의 지못한 千息 業勞幼齒하러 왔느냐 하고 錢委員長의 계 暴行을 叱하는 一便, 그는 拳銃으로서 威脅하고 錢氏를 約三十分 동안 監禁한 事實도 있었다

二、朝勤爭議의 發端

姜一適氏는 權力과 金力으로 우리 勞動者를 奴隸視하고 所謂 勞資의 最高指導者가 勞資問題로 面談하는 席上에서 不法으로 暴行을 加하고 辱詆와 脅迫으로서 對하는데 朝勤勞組 뿐만 아니라 全國大韓勞務總傘下 勞動者를 人向으로서 取扱하지 않는 것은 明白한 事實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姜氏도 大韓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그 暴行을 矯正시킬 機會를 줄 것과 또한 企業主로서 勞動者에 對한 待遇가 人向으로서 尊嚴性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所謂 辱詆, 脅迫, 恐嚇, 暴行으로 對하는 者에 對한 適當한 制裁를 加하여 앞으로 民主主義國家의 勞動者도 國民의 權利와 義務과 人向으로서 尊嚴性을 가지게 하는 崇高한 人權斗争과 더불어 勞動者를 不法으로 解雇와 勞勤組合運動의 不當干涉를 排除하고 人事移動을 爲하여 被害를 입은 同志들에 經濟的 被害를 回復시키기 爲하여 朝勤의 勞動者는 諸般 惡條件을 克服하고 斗争의 旗幟를 높이 들고 大千勞動者는 鐵田結하여 惡辣無道한 姜一適의 挑戰에 對하여 力을 모으고 對抗하기를 全職員이 盟誓하였다.

(1) 姜一適氏 勞組機能의 麻痺策을 企圖

爭議向 勞組幹部를 解雇시키려는 것은 企業主의 常套手段이다. 그러나 爭議向 勞組幹部를 不法으로 解雇시키도 法令은 이를 不法으로 規定되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十一月二十五日 姜一適氏는 委員長 朴昇台、副委員長 李相玉 兩名을 解雇시키고 勞組幹部를 校園에 赤色 罷校를 工場에 罷校하는

誣告와社長室에不法으로四五時向시를監禁하여勞阻機能의麻痺策을企圖하였으나實明한
朝勤勞動는오직여憤慨하여田疇은日益鞏固되여자음으로姜氏는오직여委員長解雇를後
悔하는氣色이있었다

(2) 手議條件의明示

朝勤에一二三名의高工監督當局의承認있는幹部增加로서其當時朝勤에는縹布生産量의五分
之厘를從業員配給量으로劃當되였기때문에新入員一二三名이入社한다고生産量이增加되지
않는것은그들의技術者도않이고事務能力者도않인百貨店商人또한姜氏妻男妹夫同孀의親
近者이며救濟系統에는不必受한人物이기때문에生産은增加를보지못하고新入者一二三名의계
도生産量의五分之厘의剩餘量中에서配給하게되니이로因하여全從業員의配給量이減少되
고있음으로여기에서配給量劃當의增加없이高工當局의承認있는不正入手採用의

- (가) 撤回로서入手原狀復旧
- (나) 勞動者의人權保障
- (다) 自由勞動運動의保障
- (라) 姜一遺氏罷免要求

以上四條件을手議向勞動者의要求條件으로하였던것이다

三、反動分子의出現

朝鮮爭議의 宣言文을 全國組織代表者의 會席下에 合議를 然後에 紙上으로 發表된지 二三日後에 突
 然히 朝鮮爭議 反對聲明書가 紙上으로 報導되였다. 이 것은 果然 勞總의 指導者라고 自認하
 는 趙光愛, 朱鍾馥, 曹龍基의 三氏가 姜一暉氏의 權力和 金力에 買受를 하고 우리 勞動者를 犧牲에
 使하여 그들의 野慾을 充實시키려는데 있는 것이며 그 反對聲明의 內容은 이것을 爭議로 認定지
 않고 個人向의 衝突로 取扱한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茫然 窒息할 일이다. 勞動者의 戒彈하는
 것도 不法解雇하는 것도 個人向인 것인 까. 그들은 姜一暉에게 買受되였다는 自己의 告白書를 發表한
 것이었다.

1. 趙光愛氏의 行動

우리 勞動者의 利益을 代辨하기 위하여 國會에 보낸 趙光愛氏는 國會에서 朝鮮爭議의 上程을 勸告
 하고 그들에 聲明을 反駁한 朝鮮正副委員長을 治安局에 까지 告訴하였고 姜一暉氏가 우리 勞動
 者를 不法解雇彈压하는 것을 오히려 懲罰하고 있는 反逆行爲를 하였다. 趙氏는 此로 인하여 未登浦委員
 長으로부터 追放당하고 勞總에서는 아무 關係 있는 者가 되었다.

2. 鐵道委員長 朱鍾馥氏의 行動

朱氏는 鐵道에서 獨斷으로 聲明을 發表하여 姜一暉氏의 附屬하였고 鐵道에 있는 同志들을 朝鮮의 派
 遣시켜 朝鮮爭議에 企業主를 擁護하고 自稱 中央副委員長이라 하여 가진 謀略으로 朝鮮爭議의 運

相을故意로 조종하고 朝野의姜氏天狗徒輩幾個分子와 화합하여 所謂反對宣傳文을 朝野에 다 붙이고 無條件姜一遜氏에盲從함으로써 自己의野慾을 充實시키려한 그야말로 勞動運動의 反對者이다 그는 이러한罪過를 범하였기때문에 鐵道全國大會에서 委員長에 落選되었으나 姜一遜氏에 阿附하여 官權과暴力을利用하여 僭稱鐵道勞組를 만들은 가장惡買的인 勞動부로서가다

3. 趙龍基氏의 行動

慶北委員長으로서 總本部副委員長이였으나 去年 自由勞聯에 自己를 參席시키지않았다는 不平으로 朝野 勞動運動의 反對者을었으나 直接行動은 없었다 그는 洋者로서 良心에 苛責을 받은 것으로推測되며 그는 亦是 朝野 勞動運動에 反對하였기때문에 慶北委員長으로 부러 追放당하였다

以上과같은 勞總의 反對分子들은 所謂 淨化委員會라 는 것을 組織하여 主로 朝野 勞動運動에 姜一遜惡買企業主를 도입는 機關으로서 外形上 勞總의 分裂을 假裝하였기때문에 이로인하여 朝野 勞動運動가 열거나 勞動者側을 不利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大韓民國 勞動史上에 크나큰 污點을 남긴 것을 明確한 이다

四. 爭議의 國會上程

4. 國會 議事 宣前 展示 威

一月十二日附警察의 行政指示命令으로서 우리 勞動者精神을 惹揚하는 傳報 手帳카드의 貼行을 禁止當

하고 各自가 等에도 豫語를 붙이고 있었으나 이것도 禁禁으로 不得인 行動을 禁止當한 同志들은 一月二十日 國會에서 討論 및 議事 前圖에서 韓勤社長 姜一暹 罷免要求를 連呼하는 大示威을 敢行하였다 其當時 參加人員은 非當者 1,500名 可量이었다

2. 國會 調查團 選定

一月二十日 勞動者의 呼號로 말미암아 國會에서는 緊急 動議가 採択되어 韓勤爭議 真相 調查를 하기 爲 하여 調查團 五名이 選定되었다 이 調查團은 公平한 見地에서 緊急 調查를 進行하여 모든 真相을 把握하게 되었는 것이다

3. 姜一暹 社長の 罷免 決議

一月二十日 韓勤爭議 真相 調查를 完了한 調查團 二行은 國會에서 真相을 正式으로 報告하고 姜一暹氏의 罷免 決議의 動議案을 採択하여 姜一暹氏의 罷免 決議가 可決되어 勞動者側의 正義가 天下에 明示되었다

4. 同志의 拘禁

一月三十一日 突然히 勞組幹部 七名이 拘禁되었고 이어 委員長 等 六名의 勞組幹部가 拘禁되었는데 그 理由는 一月二十日 韓勤內示威에 對한 責任이었다 그리하여 拘留期限滿了와 同時에 罪狀는 判明으로 釋放되었고 其前後로 數名은 同志가 警察에 引致當한 事實이 있다

五、朝勤罷業宣言

1. 朝勤使僑勞組의發生

國會에서罷免決議까지된朝勤爭議는解決을보지못하고姜一蓮氏의彈壓은日益極甚하여것이本年三月十日에는突然姜一蓮氏가朝勤勞組의組織을瓦解시키려는手段으로朝勤에있는幾個反勤分子及朱鍾馥一味와街頭不良者와野合하여釜山市西面北星劇場에서所謂朝勤勞組改倫이라하여都合三十余名으로六千役業員을擁하는朝勤勞組를改倫하였는데召集權者도않인姜一蓮勞組를안들기慮하여本大會에參加한朝勤代議員은一人名인데其中五名은除名당한者이다朝勤代議員總員一〇二名中一人名參席社會議를正式會議로自稱하며結成하고不法的으로朝勤勞動組合을占據하여勞組幹部의出入을通體와警察官(請願)이制止하는一便그들은勞組幹部를改行하여傷處를내는等朝勤手態를그들의良心에立脚하여收拾할수없는것을直覺하여勞勤者의最右의武器인罷業을採하였던것이다

2. 罷業의狀況

姜一蓮氏의惡辣無道한處事의激憤한朝勤同志는一途의三月十二日을期하여罷業을斷行하였는데不過三十余名의抑制로끌여왔어就業할반이였기때문에朝勤은完全罷業으로突入하고말았다

朝鮮罷業이發生되자 來鍾驅味는 朝鮮의一部 反動分子와 더불어 罷業決定反對라는 根柢를 이마에 붙이고 추를 들고 罷業한 文工들의 家宅搜索을 하여 文工들을 逮捕하여 工場으로 連行하여 無敎히 毆打하였고 警察과 協同하여 罷業한 男工들의 在所를 搜索하여 逮捕당한 者는 警察官에 앞서 無敎亂打하고 傷處를 입은 者가 數出하는 등 같은 同志로서 또 한 같은 勞動者로서 었저 금수가 많인 이상 그렇게 殘忍하게 할 것인가 그들은 이렇게 우리 勞動者를 못살게 한 姜一通氏보다도 惡質인 元氏이다

4. 罷業으로 因하여 勞動者의 被害狀況

- △ 警察에 拘禁內로 取調를 받은 者 或은 毆打를 당한 者 一〇〇名以上
- △ 反動分子 姜一通氏 夫 拘들의 毆打를 당한 者 六〇〇名以上
- △ 傷處를 입은 者 三〇〇名以上

六. 罷業後의 經過

1. 罷業後의 罷免者

朝鮮罷業後 勞組員으로서 熱誠의인 同志로 指目당한 者는 모조리 罷免되어 不法解雇가 百五十餘이었는데 其後 姜一通氏는 自己가 創設한 不法僑稱勞組를 朝鮮에다 連接하여 우리 善良한 同志를 奴隸取扱하는데 證據를 爲하므로 罷免당한 勞組幹部와 入會를 文한 者도 無條件 罷免이요 우리 勞組의 會議에 參席한 者도 罷免이요 野遊會를 같이 하여도 罷免을 시키어 至今은 三 百餘名에 達한

를 見 者 를 내 고 있 는 實 情 임

2. 朝 勤 에서 李 鍾 南 同 志 를 道 議 員 選 舉 에 當 選 시 킴

朝 勤 罷 業 을 前 後 하 여 勞 働 에 力 과 한 李 鍾 南 同 志 를 釜 山 乙 區 에 서 出 馬 시 키 最 高 得 票 으 르 當 選 되 었 는 데 그 選 舉 運 動 에 姜 一 道 을 批 判 하 였 다 는 理 由 으 로 選 數 의 男 女 工 이 解 雇 을 當 하 였 다 그러나 그는 現 在

朝 勤 勞 組 幹 部 의 代 表 議 員 이 姜 一 道 氏 와 만 나 서 斗 爭 을 弱 體 化 시 키 는 策 動 을 하고 있 다 는 事 이 다

3. 各 級 勞 組 의 고 마 은 援 助

京 畿 三 和 龍 工 의 各 勞 組 에 서 는 우 리 朝 勤 組 員 의 勇 敢 한 斗 爭 을 讚 揚 하 여 同 志 들 에 設 意 賦 與 마 아 주 신 約 八 百 萬 円 可 量 의 金 額 을 援 助 하 여 주 시 어 우 리 들 의 士 氣 는 衝 天 하 였 고 生 活 苦 難 에 처 디 이 는 罷 免 當 然 同 志 들 을 慰 勞 할 수 있 는 生 光 스 러 운 事 物 이 었 다

七. 大 韓 勞 働 總 一 大 會 와 朝 勤

大 韓 勞 働 의 分 裂 은 外 形 上 分 裂 같 이 보 이 고 있 아 오 나 이 는 朝 勤 爭 議 以 後 組 織 을 難 脫 하 고 勞 働 運 動 의 根 本 理 念 에 背 脫 된 行 動 으 로 組 織 에 서 逐 出 當 然 幾 個 反 動 分 子 가 組 織 을 떠 나 서 權 力 과 金 力 에 倚 附 하 여 勞 働 의 介 護 이 있 을 것 같 이 假 裝 하 고 勞 働 者 의 介 護 이 라는 美 目 을 팔 아 自 己 들 의 野 慾 을 채 우 러 는 데 基 因 子 는 으 로 지 大 韓 勞 働 에 籍 을 둔 者 의 良 心 的 判 斷 일 것 이 다 그리고 朝 勤 에 現 在 不 法 僭 稱 勞 組 는 姜 一 道 氏 가 自 己 의 保 身 策 으 로 서 急 進 한 것 이 며 이 것 은 大 韓 勞 働 總 一 大 會 勞 働 組 合 이 라는 美 目 을 假 裝 한

데不過한것이다

1. 統一收拾과 朝劬

以上과 같은 世稱 勞總分裂의 根本動機가 朝劬爭議에 發端이 있었다면 朝劬爭議의 解決은 第二義的이라 할지라도 朝劬에서 勞動組合이라고 自稱하는 所謂 勞總 反逆 輩 李鍾國氏 首班의 一味와 爭議로서 今曰의 慘境을 겪고 있는 朴昇台 委員長을 爲始한 勞動組合을 勞動運動의 根本理念의 絶對的인 權威를 確立시키어 勞動運動의 安寧을 保障하기 爲하여 (所謂 勞動者를 爲한 勞動運動을) 朴昇台氏의 勞組를 正統으로 規定하는 勞動運動의 大義名分을 세우지 않으면 統一全國大會의 意義를 保有할 수 있을까 甚히 疑向으로 生할지 疑할 수 없는 것이다

2. 矛盾된 現狀

統一全國大會準備委員會에서는 大慈 領袖下의 勸誘로서 各分裂된 勞組의 全國大會代表員 選拔權 歸屬을 圍繞하고 會議가 社會部長官室에서 景武台 張秘書官之會下에 開催되었는데 朝劬의 代表員은 現組織이 있는 李鍾國의 選拔權을 認한다는 提案이 있었는데 勞總의 理念을 忘却하고 參席者 全部가 아무 關係가 없었다고 하니 참으로 大韓勞總의 未來를 憂하여 寒心之事이며 이에 對하여 一言半句도 正當한 主張이 없었다는 그들은 大韓勞總의 勞動者를 爲한 行動보담 權力和 金力과 地位가 앞서는 處 事를 例事로 敢行하는 義理 없고 正義를 물으는 機會主義的 存在가 不인가 疑心한다

八、第一全國大會와 朝翁의 가는 길

數百名의 犧牲을 낸 朝翁爭議는 朝翁勞動者가 正義에 立脚하여 斗爭하였고 그 斗爭이야 말도 우리 獨立路線을 死守하는 民族田畝의 模範의 人斗爭으로 大韓勞動史上에 燦然한 一頁을 남길 것이다

이러한 英雄的斗爭의 歸趨가 가장 幸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을 規定하는 審判台야말로 第一全國大會의 會場만이 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歷史를 創造하는 者、 義를 세우는 者、 오로지 權力和 金力에 는 어두워 져어는 않 될 것 이 며 다만 大韓의 勞動者를 爲한 어 勞動運動의 指導者로서의 全國代議員여러분의 正確한 判斷이 朝翁勞動者 死活을 決定하는 것을 믿어 맞 이 않 으 며 全國代表者가 決議下에 採 執된 이 朝翁爭議를 여러분의 決議로서 원칙에 믿어 줄 것 을 囑 咐 하 여 맞 이 않 는 다